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5월 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5월 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·제11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(2005년 5월 17일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청소사업소장 문병섭)

□ 제안이유

○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부천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・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도록 함.(안 제3 조)
-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천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・

운영을 그 기능 및 활동내용이 유사한 부천시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시민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함.(안 제6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상위법에 부천시재활용추진협	○ 쓰레기문제해결위한시민협의회
의회 구성원으로 재활용사업자를	기능에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역할도
포함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?	포함하고 있으나 재활용추진협의회
	위원에 재활용사업자 포함여부는
	규정을 검토해 보아야 겠습니다.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
 - 없 음
- 나. 반대토론
 - 없 음
- 5. 심사결과
 - 원안의결
- 6. 소수의견 요지
 - 없 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
 - 없 음

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383호
의결	2005.5.19
년월일	(제119회)

제출년월일 : 2005. 5. 4. 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부천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을 개선하고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・보완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가.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도록 함. (안 제3조)
- 나.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천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·운영을 그 기능 및 활동내용이 유사한 부천시 쓰레기문제 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함.(안 제6조)

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명 "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"를 "부천시 자원의 절 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·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중 "법 제7조제2항"을 "법 제7조제4항"으로, "자원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고"를 "자 원재활용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" 로 한다.

제4조중 "법 제16조제1항"을 "법 제15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시장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6조(재활용추진협의회) ①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·단체·관련학자 등으로 구성된 부천시재활용추진협의회(이하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「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」제15조의2에 규정된 부천시쓰레기문제해 결을위한시민협의회에서 대행한다.
 - ③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·여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"제15조제4항"을 "법 제15조제1항"으로, "조사·검사하게"를 "출입하여 관계서류·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"로 하고, 동항 제1호중 "법 제15조제4항"을 "법 제10조제1항"으로, "사용자제"를 "사용억제"로 하며, 동항 제2호중 "법 제16조 제1항"을 "법 제15조제1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</u> 한조례	<u>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</u> 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 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, 동법률시행령(이 하"영"이라 한다) 및 동법률시행 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·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
제3조(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) 시장은 <u>법 제7조제2항</u> 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의거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안의 <u>자원재활용에 대한 기본계</u> 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 여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 행하여야 한다.	법 제7조제4항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보관 하여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보관 용기의 설치, 보관방법등을 강구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. 제5조(재활용 사업자등의 지원) ① 제5조(재활용 사업자등의 지원) ① 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! 시장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여 다음 각호의 재활용 사업자에 재활용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 다음 각 호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6조(재활용추진협의회) ①시장은|제6조(재활용추진협의회) ①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·단체·관련학자, 재활용 시민 · 단체 · 관련학자 등으로 구 사업자등으로 구성된 시재활용추 성된 부천시재활용추진협의회 이 진협의회(이하"시 협의회"라 한 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・ 다)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. 운영할 수 있다. ②시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「부천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,여 비등 실비를 시협의회 구성위원(이 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 하"위원"이라 한다)에게 지급할 수 15조의2에 규정된 부천시쓰레기 있다. 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에서 대행한다. ③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

신・구조문대비표

연 행	개 성 안
	대하여는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수 당·여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제7조(보고 및 검사등) ①시장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 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	
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제15조제4항</u>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폐 기물배출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	<u>법 제15조제1항</u>
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	출입하여 관계서류·시설 및 장 비 등을 검사하게
1. <u>법 제15조제4항</u> 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<u>사용자제</u> 등에 관한 사항의 실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	
2. <u>법 제16조제1항의</u> 규정에 의 한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	2. <u>법 제15조제1항</u>
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